



# 가산 드림타워<sup>e1</sup>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주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합니다.

개발업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번호
서울 090081호	2022-건축과-신축허가-13 (2022-02-22)	지역경제과-11110 (2023-03-23)

## 1. 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가.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 가산 드림타워<sup>e1</sup> 지식산업센터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3-7

다. 건축규모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1,915㎡	지하4층~지상15층	958.2375㎡	15,413.7346㎡

## 라. 설립자의 명의

시행사	매도인 겸 수탁자 : 코리아신탁(주) 대표이사 백인균 (사업자등록번호 : 215-86-52007)
	시행위탁자 : 드림타워피에프비(주) 대표이사 전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428-81-02660)
시공사	중앙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익수, 박영관 (사업자등록번호 : 136-81-12051)
	동우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홍필 (사업자등록번호 : 105-81-35216)

## 2. 용도별 등급면적

(단위 : ㎡)

용도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지분	호실수(실)
		일반공용	주차장			
산업시설(공장)	5,810.2495	4,231.8846	4,380.6061	14,422.7402	1,791.8790	113
지원시설	450.9464	136.5376	403.5104	990.9944	123.1210	12
총계	6,261.1959	4,368.4222	4,784.1165	15,413.7346	1,915	125

- ※ 공장 및 지원시설 등은 호실 면적에 따라 공급되며 면적 및 호실 수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의 증감이 있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계약면적의 1%)내 증감은 별도 정산하지 않으며,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증감은 잔금 납부일 및 입주자정일 통보시 최종면적을 통보하고, 잔금은 정산된 금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 ※ 면적표기 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함.
-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 ※ 상기 용도별 세부 호실 면적 및 가격은 분양홍보문(분양사무실에서 확인 가능함).
- ※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름.

##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가. 산업시설(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한 입주업종으로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관리규칙(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28호)에서 정한 입주대상업종으로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1) 「산업집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
-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최초 분양자는 부동산 임대인이 불가하며, 산업시설(공장)을 분양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입주지원팀과 협의 후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입주지원팀 1688-7277)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http://blog.naver.com/kicoxs12> 참고

나. 지원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업종 및 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

-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다. 입주제의 대상 업체 및 시설

- 1)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 3)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규칙에 의해 제한업종

제한사유	허용산업분류 등
용수다소비 업종	23311(시멘트 제조업), 23322(레미콘 제조업), 23991(아스콘 제조업)
입주부적격 업종	134(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11(발포 제조업), 1011(도착업), 10611(국물도정업), 45-47(도매 및 소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지정 악취물질 및 특장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안허가기관으로부터 사전협의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 ※ 단, 상기 입주제한업종 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 4) 고하중(당해 건축물 설계하중 초과) 기계장치 또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장 유지관리에 위해가 되는 업체
-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소방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위험물, 특수 가연물을 취급하는 공장
- 6) 기타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유지 및 다른 업체의 생산 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공장
- 7) 기타(기계, 전기, 설비 등) 설계상 입주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공장
- 8)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가 제한된 업종 및 시설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업종
- 9)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되는 임대사업자(공장시설에 한함)

## 4. 공급가격과 계약금, 중도금 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

### 가. 총별 분양가

(단위 : 원/3.3㎡, VAT 별도)

구분	산업시설(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토지비	건축비	계	토지비	건축비	계
지상 1층				10,427,126	21,573,122	32,000,248
지상 2층	4,849,442	10,033,670	14,883,112			
지상 3층	4,902,193	10,142,831	15,045,024			
지상 4층	4,951,334	10,244,509	15,195,843			
지상 5층	4,957,591	10,257,461	15,215,052			
지상 6층	5,005,424	10,356,417	15,361,841			
지상 7층	5,006,292	10,358,212	15,364,504			
지상 8층	5,005,424	10,356,417	15,361,841			
지상 9층	4,992,586	10,329,857	15,322,443			
지상 10층	5,018,203	10,382,854	15,401,057			
지상 11층	5,038,291	10,424,414	15,462,706			
지상 12층	5,038,291	10,424,414	15,462,706			
지상 13층	5,018,701	10,383,881	15,402,582			
지상 14층	5,018,701	10,383,881	15,402,582			
지상 15층	4,993,734	10,332,221	15,325,954			

- ※ 상기 총별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며, 총별 평균 단가로 호수(위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 향후 총별 용도의 변경 및 사업 사용승인으로 면적 증감 시 확정면적에 따라 재정산함.

### 나. 대금납부시기 및 방법

용도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산업시설(공장)	납부시기	계약시	24.02.29	24.05.29	24.08.29	24.10.29	24.12.27	입주자정일
	납부비율	10%	10%	10%	10%	10%	10%	40%
지원시설	납부시기	계약시	24.02.29	24.05.29	24.10.29	24.12.27	-	입주자정일
	납부비율	10%	10%	10%	10%	10%	-	50%

- ※ 중도금 납부일정 및 비율은 사업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홍보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름.
- ※ 계약자 신용도 또는 금융권 제도변화에 따라 중도금 일부 또는 전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며, 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다. 분양대금 납입계약

구분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
산업시설(공장) 및 지원시설	코리아신탁(주)	9002-2006-4698-2	새마을금고

※ 계약자는 분양대금(계약금 등 부가가치세 포함) 납부 시 상기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계약자에게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지정된 계좌로의 입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납부된 분양대금(타 계좌 입금 또는 현금지급 등)은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받지 못함.

### 라. 중도금 대출 안내

- 1)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금융 기관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산업시설에 한함)의 총 분양대금의 최대 50% 내외로 무이자 용자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소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2) 대출 규모는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개별 신용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금과 잔금 등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3)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집대 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책임하에 조달하여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함(이와 관련하여 별도 통지 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4)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시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5) 계약자가 금융신용 부적격자이거나 또는 계약자 사정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6)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의 소유권이전일 또는 입주자정기간 만료일 중 선도래하는 날까지 대납하며, 입주자정기간 만료일부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7) 계약자 신용도 또는 금융권 제도변화에 따라 중도금 일부 또는 전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며, 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5. 입주예정일 : 2025년 2월 예정 (현장여건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지정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통보함.

### 6.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구분	부대시설			비고
	주차장	엘리베이터	비고	
규모	4,784.1165㎡	비상용(화물겸용)	1대 (2톤)	체력단련실, 회의실, 휴게실, 세미나실, 교육실, 공용창고 등
	93대	승객용	18인승 ~ 2대	

※ 상기 시설 일부는 입주 시 면적 및 위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7. 입주자의 선정일시, 방법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가. 분양신청 및 분양 계약체결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로 함.

#### 나. 분양신청 서류

- 1) 분양계약서(당사 소정양식) 1부
- 2)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명함
- 3) 본인(대리인)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계약자의 인감의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 지참)
- 4) 대리인 위임장 및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분양 계약에 필요한 확인서(당사 소정양식)
- ※ 제반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다. 선정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의 유자격자에 한해 선착순(수)의계약에 의한

#### 라. 계약취소,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약자가 하였을 경우, 분양계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급자는 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 있음

- 1)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위 건물을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건물의 형상을 공급자의 승인 없이 변경(형상변경 또는 증축)하였을 경우
- 2) 공동시설, 공용면적 등 대지의 공유지분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
- 3)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잔금을 입주자정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 4)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공급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5)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부적합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하였을 경우
- 6) 계약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표시목적물을 훼손하거나 기타행위로 공급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 7) 기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타 업체에 위탁되는 행위 또는 위탁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8) 각종 적정 설계기준(소음, 진동, 하중 등)을 초과하여 기계 및 장비를 반입·설치하는 경우 및 화재 위험물을 반입, 공해유출 등 타업체(표시목적물의 계약자)의 위해가 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 9) 집합건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 10) 부당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가능 업체가 아님이 판명될 경우
- 11) 관리기구가 정하는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12) 모집공고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부적합한 업종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입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13) 계약자의 표시, 회생 등의 절차 신청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 14) 기타 분양계약서(입주운영계획서 포함)에서 정한 사항을 수분양자가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15) 분양계약서상의 기타 내용을 수분양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마. 인지세 납부 안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전에 관한 중서’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제출하여야 분양계약체결이 가능함

### 8. 총별, 공장별 허용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비고			
높이 (총고)	지하 4층	3.75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기된 총고는 단면상의 기준 총고임</li> <li>• 옥상정원, 공개공지 등 바닥 마감기 기준총고와 다른 부분의 하부 실은 총고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시공 시 설비, 전기, 배관 등의 설치로 실제 유효높이가 증감될 수 있음</li> </ul>		
	지하 3층	4.15 M			
	지하 2층	3.75 M			
	지하 1층	4.6 M			
	지상 1층	7.0 M			
	지상 2층	5.0 M			
	지상 3~10층	4.0 M			
	지상 11~13층	5.0 M			
	지상 14층	5.3 M			
	지상 15층	5.0 M			
설계(제재) 하중	지하 4층~지하 1층 주차장	306 kg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설계기준(하중)을 초과하여 기계장치 설치 불가</li> </ul>		
	지상 1층	510 kgf/㎡			
	지상 2층~14층	612 kgf/㎡			
	지상 15층	357 kgf/㎡			
	소음 및 진동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배되는 기계장치 설치 업체는 입주 불가	
재료 마감	내부	공장	바닥	데코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확산방지구조/복합자체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자재</li> </ul>
			벽체	수성페인트	
	지원 시설	벽체	천정	9.5T 석고텍스	
			바닥	데코타일	
외부	THK24 로이복층유리 + 석재마감 + BIPV	• 화재확산방지구조/복합자체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자재			
전력공급	수전용량	2,000 K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 시 전력용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ul>		
	발전용량	610 KW			
전화회선	국 선	2,600 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 시 회선 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ul>		
	내 선	5,12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가스시설	공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시설 없음</li> <li>• 1층 각 호실 도시가스 배관</li> </ul>		
	지원시설	도시가스			
급수시설	80A	-	• 시 상수도 인입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시공 설계변경 및 사용승인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9. 기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1) 본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공장의 입주(분양) 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분양)자격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장시설의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에 관한 협의사항을 반드시 체결하고, 산업집적법 제15조 1항에 따른 완료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2) 매수인(수분양자)은 입주계약체결시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주계약을 신청하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주대상 및 업종 및 자격을 위한 심사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입주부적격 업체로 확인되어 입주계약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3) 분양신청자 및 계약자는 홍보관에 비치된 도면, 분양계약서 및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등을 열람하여 분양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1호 나목에 의거 공장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경각반은 취득세가 추정되므로 세부적인 세법 개정 내용 등은 계약자가 관련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숙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5) 분양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는 계약자가 관할 세무서 문의 등을 통해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분양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음.
- 6)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배포된 분양홍보물 및 기타 유인물에 표현된 이미지, 평면 등의 CG, 홍보관 내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7) 산업집적법 제28조의6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의3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정한 제반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8) 본 건물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9) 외국인인 국내 부동산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함.
-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분양계약자는 주무관청에 사전에 확인 및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함.
- 11)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인근 유해시설의 위치는 계약자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7 (입주자 등의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耐力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li> <li>2.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積載荷重)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li> <li>3.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사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사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li> <li>4.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li> </ol> </li> <li>②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li> </ol>
---

## 10. 관리형태지식산업계약 관련 고지사항

-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시행위탁자 드림타워피에프비(주)와 매도인 겸 수탁자 코리아신탁(주), 시공사 중앙건설(주), 동우건설산업(주)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며,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하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자 드림타워피에프비(주)를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2) 매도인 겸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시행위탁자 드림타워피에프비(주)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이외에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계약금 반환, 입주자연세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드림타워피에프비(주)이 부담하며, 매수인은 코리아신탁(주)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3) 본 사업 관련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선 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시행위탁자 드림타워피에프비(주)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4) 시공사 하자보수 책임은 시공사 중앙건설(주), 동우건설산업(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5)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 6)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7) 시행위탁자 드림타워피에프비(주)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8)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위탁자 드림타워피에프비(주)와 매수인간에 또는 시공사와 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9)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공고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10) 입주예정일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일(대출금의 최초대출일로부터 28개월)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정일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11) 또한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시공사를 대신하여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은 6개월 이내에서 자동 연장되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하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11. 부동산개발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표시

구분	광고개제 문구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코리아신탁(주) (등록번호 : 서울 090081호)
영업소 소재지	코리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인-허가 사항	지식산업센터 15층 (15,413.7346㎡)
인-허가 기관	서울시 금천구청
인-허가번호 및 연월일	2022-건축과-신축허가-13 / 2022년 02월 22일
소재지, 지목, 용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3-7 지목 : 공장용지 용도 : 산업시설(공장), 지원시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이전 완료
소유권 이전형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코리아신탁(주))
공사착공 / 준공 / 입주예정일	2022.10. /